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454-038829-02-001 김덕진(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 연락처 |

인권운동사랑방(유해정) ☎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김덕진) ☎ 02-777-0643

홈페이지 <http://antiprison.org/antiboho>

소리없는

사회보호법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아직 이 세상엔 전라자, 피보호감호자라면 나와는 너무나 멀기만 한 이질적인 집단, 사회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높은 담장, 철창 우리 내에 가두고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과 가십이 한 인간을 낙인찍고 결국엔 제도적 부당성을 핑계화하여 영원히 기회균등 없이 탈락자가 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쓰레기일 뿐입니다"

-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온 피보호감호자의 편지 중에서

매일 청송에서 오는 편지행렬은 끝이 없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편지가 고달파서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징역살이에 대한 동정과 연민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가 결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지도,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지도 않는 반인권적이고 위험적인 제도라 확신하기에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은 결코 이 사회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라 낙인찍힌 이들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3년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는 1600여명에 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법무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모든 권한과 열정, 관심을 쏟아 부어 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램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옹호의 선서를 한 이들이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역시 피보호감호자들을 비난하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낙인찍기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그들의 소외된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튼튼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1달여간의 노력 끝에 열매를 맺는 이 소책자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어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5월 19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CONTENTS

목 차

1장 보호감호제도란?	7
1. 사회보호법의 역사	7
2. 보호감호제란?	13
3. 보호감호 적용실태, 제도의 문제점	15
2장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19
1. 위치와 시설	19
2. 교도소와 다름없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20
3. 소장의 권한, 가출소	33
3장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38
1. 사회보호법과 헌법	38
2. 사회보호법과 인권	41
3. 사회보호법 폐지, 그 후의 대안과 외국 사례	46

4장 보호감호와 싸우는 사람들	49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로 인정받은 박영두 사건	49
2.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1	52
3.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2	54
4. 2002년 집단 단식 농성에 대하여	55
5장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58
6장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본활동방향	61

CONTENTS

1장 보호감호제도란?

1. 사회보호법의 역사

Q 사회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A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사회보호법 제1조).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에게 부과되며 최대 7년의 기간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됩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인 및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집행되는데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가종료 후 3년간 일상생활에 대한 신고의무 및 준수사항을 부과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Q 사회보호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A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사회 정화’라는 미명 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해 전국에서 6만7백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만9천7백42명이 군부대로 강제 이송시킨 후 삼청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회의 쓰레기들, 위험할 수 있는 자들을 격리·교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지만,实은 불법적인 권력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신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일이 바로 삼청교육이었습니다.



다.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은 새 삼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진 전두환 정권은 교육생들이 곧바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그들을 다시 장기간 격리시키기로 결정했고, 그러한 의도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에게 ‘보호감호’라는 형벌 아닌 형벌이 다시금 부과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법률이 바로 사회보호법입니다.

사회보호법으로 처음 수감된 사람들이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보여지듯이 사회보호법에서 도입한 보



호감호제도는 상습범인에 대한 재사회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군사정권이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호법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1989. 3. 25. 세 번째 개정에서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필요적 보호감호와 필요적 치료감호제도를 폐지하고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요

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도록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연 표	주 요 내 용
1980. 12.18	국가보위법회의, 법률 제3286으로서 사회보호법 제정
1981	청송보호감호소 설립,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라는 명목으로 청송보호감호소 입소
1984	청송보호감호소 박영두씨 폭행치사 사건
1989	특정범죄 위반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적으로 부과되던 필요적 선고제도(10년)을 폐지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적 선고(7년)제도 존치시킴
1991. 2001	현법소원 : 합헌결정
2002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 집단 단식농성 (4월, 10월, 11월)
2003.3.	26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현법소원 청구

어떤 정치 지도자가 국민 모두가 혐오할만한 공동의 적을 설정해 놓고 국민 개개인의 증오 본능을 그리로 향하도록 유도하면서 자신을 그 전쟁의 선봉에 세워 놓으면 그는 문명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다

曰 조지 허버트

Q 보호감호란 무엇인가요?

A 사회보호법 중 보호감호는 동일 혹은 유사 범죄(절도, 폭력, 사기, 강도, 상해, 살인, 강간, 미성년자 추행)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이후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보호감호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일정 범죄에 대한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법원은 상습성을 ‘반복되는 행위에 의해 얻어진 습관, 성격상 소질 또는 관행에 의하여 획득된 내부적 성벽으로 인하여 반복하여 죄를 범하고 또한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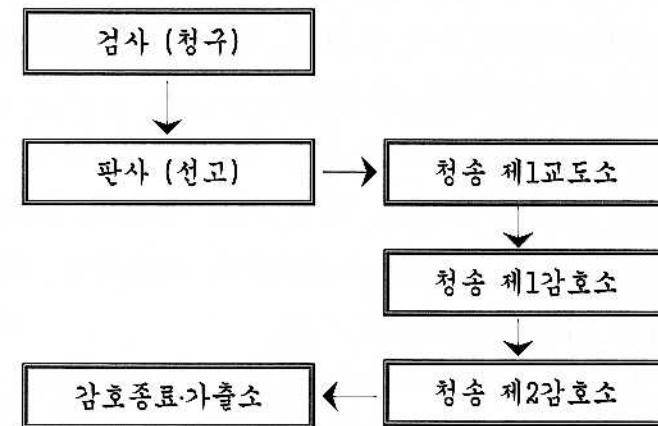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대상자가 앞으로 죄를 범할 현저한 개연성을 가진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연령이나 가정관계, 학력, 직업, 전과관계,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의 시기, 그 기간 동안의 행정, 당해 범행의 동기와 횟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나 ‘상습성’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요건들은 보호감호 집행 전에 판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본형을 판결할 때 같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이미 없어진 사람을 무고하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호감호제란?

Q 보호감호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나요?

A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출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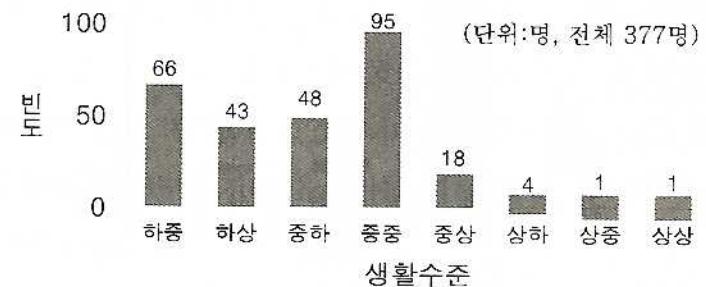
① 검사는 법원에 절도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보호감호청구를 동시에 합니다.

- ② 법원은 절도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면서('징역 3년에 처한다'와 같이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합니다) 보호감호를 동시에 선고합니다('보호감호에 처한다'고만 선고하고 기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 ③ 형과 보호감호를 동시에 선고받으면 청송 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습니다.
- ④ 형의 집행이 끝나면 청송 제1보호감호소로 가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는데, 일정 정도 등급이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청송 제2보호감호소로 이송되어 나머지 보호감호 집행을 받습니다.
- ⑤ 보호감호기간 중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소를 하거나, 7년을 다 채우고 만기 출소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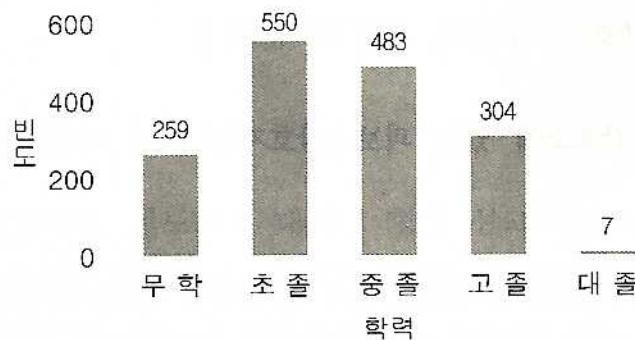
3. 보호감호 적용실태, 제도의 문제점

Q 보호감호소에 있는 피보호감호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입소 전 하층의 생활수준이었던 사람이 전체의 55.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층은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력수준을 보면 무학 16.2%, 초졸 34.3%, 중졸 30.1%인 반면 대졸은 0.4%에 불과합니다. 피보호감호자들의 대다수가 학력이 낮은 빈곤계층 출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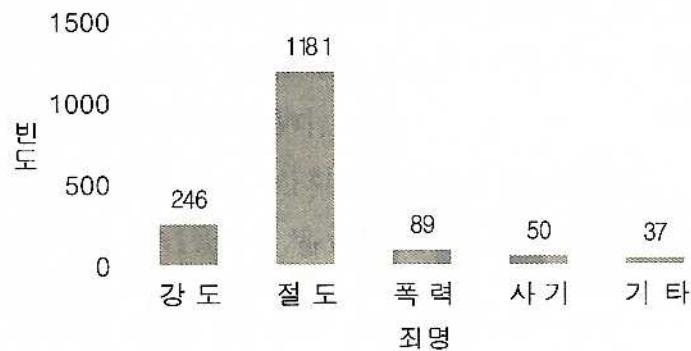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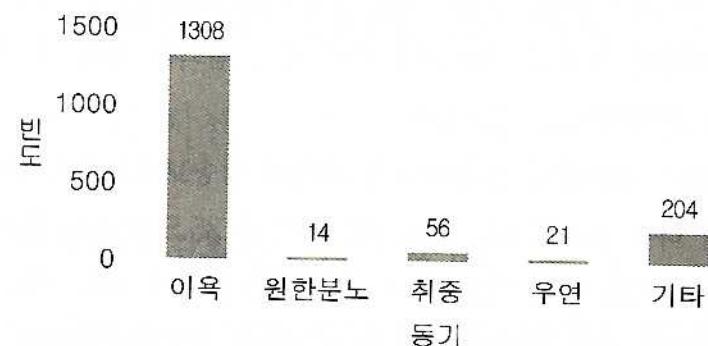
『법무연감』, 법무부(2002)(단위:명, 전체 1,603명)

*초졸, 중졸, 고졸은 교도소 또는 소년원 등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취득한 학력도 포함된 수치임

Q 피보호감호자들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인가요?



『법무연감』, 법무부(2002)(단위:명, 전체1,603명)



『법무연감』, 법무부(2002)(단위:명, 전체1,603명)

A 사람들은 막연히 피보호감호자들을 “흉악범”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피보호감호자들의 절대 다수는 단순절도범입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피보호감호자들의 죄명을 보면 절도 74%, 강도 15.3%, 폭력 5.6%, 사기 3.1%입니다. 법 시행 20년 동안 절도범들이 피보호감호자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통계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범죄동기를 보면 81.6%의 사람이 생활비나 기타 유홍비를 위해 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보호감호자들의 대다수는 학력이 낮은 빈곤계층 출신입니다

니다. 이들은 보호감호로 인해 장기수용 되면서 사회적응력 마저 저하된 상태로 출소하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00년 국정감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받는 비율이 35.5%이고, 청송보호감호소 담당자에 의하면 위 출소자들이 다시 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사회보호법은 사회의 불안요소인 빈곤계층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감호자들의 처우

1. 위치와 시설

Q 청송보호감호소는 어디에 있나요?

A 청송보호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했으며 삼면이 반면천으로 둘러싸여있고 뒷면에는 광덕산이 있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서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도 4~5시간 이상 걸립니다.

Q 청송보호감호소의 시설 수준은 어떠한가요?

A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독거수용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채 2평이 안되는 작은 방에 5명씩 수감돼 있어 칼잠을 자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동이 있지만 교도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독거실은 거의 운영되지 않아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높은 습기와 곰팡이에 시달리지만 선풍기조차 없는 곳이 허다하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따로 없어 동상과 치

질, 피부병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텔레비전 설치도 교도소에 먼저 설치된 후에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동료나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봐야하고 방문은 안에서 열 수 없고, 밖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또 철창, 감시탑, 감시등의 설치는 교도소의 외형과 같습니다.

2. 교도소와 다름없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연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지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감호 저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자유권을 박탈함은 물론 처우도 교도소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의 목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재사회화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피보호감호자 처우에 관한 법이 없다.

Q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 처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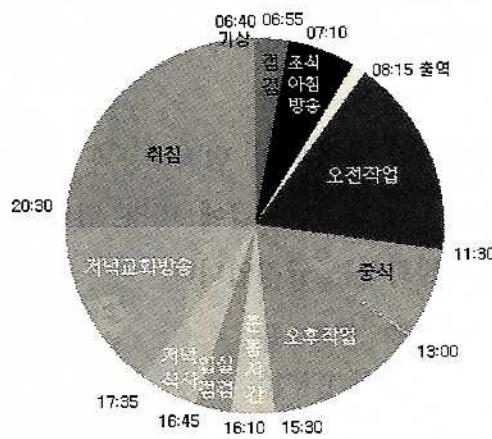
A 실제로 보호감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단 한 조항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보호법 42조는 피보호감호자 처우에 있어서 행형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생활과 직접 관련된 계호, 의료, 집필, 귀휴, 징벌에 관한 규정을 모두 행형법에 따라 수형자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자분류처우규칙과 같은 내용의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 규칙'이 피보호감호자 처우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분류처우규칙이란 수용자의 범죄내용과 생활태도 등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접견이나 전화, 서신 등의 처우를 차별화하는 규정입니다.

Q 보호감호 집행과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A 보호감호 집행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교도관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상습범의 재사회화를 위한 별도의 훈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청송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보호감호자 처우와 집행의 최종 책임도 일반 교도소를 운영 총괄하는 법무부 내 교정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가출소 부분만 떼어서 보호국에서 처리합니다.

2) 피보호감호자들의 생활 일과표



3) 서신과 접견

Q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자유롭나요?

A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피보호감호자들은 서신의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행형법에 따라 모든 서신에 대한 불필요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열은 이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 소 측의 부당한 처우를 외부에 호소하는 경우 발송이 불허될 수 있으며 청송보호감호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검열은 불리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¹⁾ 지난 3월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는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 실제로 윤00씨는 93년 독직폭행 혐의로 소장 등 교도관들을 고소했지만 검열을 한 교도소 측이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급기야 허위로 작성한 취하서를 접수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중이다.

Q 접견(면회)은 자유롭게 이뤄지나요?

A 접견 역시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동안 이뤄지며 교도관들이 참석해 대화내용을 적고 소 내 이야기를 할 경우 중단시키기도 합니다.²⁾

또한 청송보호감호소를 찾아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보호감호자들의 가정형편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라 가족의 접견은 정말 큰맘 먹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청송보호감호소의 접견실은 교도소처럼 수가 많지 않고 1개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늘 한산한 편입니다.

2) 유00씨는 지난 96년 접견실에서 어머니에게 교도관들의 독직폭행 사실과 고소방해 사실을 호소하다가 접견실에서 강제로 끌려나왔다. 또 혀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타와 징벌을 받았다.

4) 의료

Q 피보호감호자들의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A 장기간의 수용과 불균형한 영양섭취, 적은 일조량과 운동 부족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외부진료를 신청해도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작은 병도 큰 병이 돼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외부진료를 나갈 경우 국민건강보험³⁾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가 일반인보다 비싼데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품 구입도 보험적용 없이 피보호감호자들이 자비로 부담하지만 의료기간을 제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약물복용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들은 방치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구금에 따른 우울증과 상담치료는 필수적입니다. 97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50% 정도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한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49조 4호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의료보험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5) 지루한 작업과 낮은 근로보상금

Q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현재 거실에서 실시되는 '위생비닐작업 개수 세어 포장하기'에 종사하는 피보호감호자가 40여명이며 나머지 피보호감호자들은 모두 종이쇼핑백에 손잡이용 끈 끼어 접기 작업을 하고 있는 등 작업은 총 2가지에 불과합니다.

인원이 적은 여성 피보호감호자들의 경우는 감호소 내 식사를 제공하는 취사와 미용작업만이 있을 뿐입니다.

청송보호감호소는 대도시에 위치한 교도소와 달리 사방이 농지로 둘러싸인 극단적인 오지에 위치해 있다보니 인근에 작업을 하려 나갈 공장(외부통근제도)도, 작업을 위탁해오는 사업주도 적습니다.

Q 작업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 주어지나요?

A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피보호감호자들은 근로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평균 3천원가량을 받지만 1달 동안 모아봐야 고작 10만원도 안됩니다. 그나마 지난해 세 차례의 단식농성을 통해 인상된 것이지만 1일 최저임금이 1만8천2백원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는 액수입니다. 이 돈으로는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드는 기초 비용도 되지 못합니다.



♠ 2003년 근로보상금

작업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보상금	5800원	4700원	3800원	2900원	2300원	1700원	1400원

의약품과 일용잡화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감호소 생활에는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결국 출소할 때 주머니에 돈 1백만 원을 갖고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재기의 가능성도, 정착의 밑천도 없는 출소자들은 또 다시 '한탕'을 꿈꾸다 청송보호감호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작업은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될 뿐 아니라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과정을 통해 출소 후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돋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호소의 작업 내용과 근로보상금의 수준은 착취적 성격만 갖고 있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3월 근로보상금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6) 사회능력 제거하는 교육직업훈련

Q 사회보호법의 목적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피보호감호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A 크게 학사반과 직업훈련 두 가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사반은 교육과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책마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교도소의 경우 외부강사가 오지만 청송보호감호소는 오지에 있어

오려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정·학사고시 등에 합격 할 경우 출소 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습니다.

직업훈련의 경우 정보화교육을 비롯해 타일, 건축도장, 보일러, 미용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습이 모두 불충분해 자격증을 따도 사회에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보호감호자들은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훈련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능력 제거' 프로그램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99년 한 출소자가 법무부에 자신의 자격증을 모두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7) 출소 준비

Q 피보호감호자들의 출소 후 생활을 돋는 사전 준비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있나요?

A 자유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출소 후 사회에 나가서 문화적 충격 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귀후제도와 사회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피보호감호자를 일정기간 감호소 밖,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귀후제도는 외국의 경우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출소준비 프로그램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의 경우 귀후의 자유를 가족의 사망, 회갑 등의 경조사와 각종 훈련과 시험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간도 수용기간 중 3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견학의 경우도 국립묘지 방문, 농촌 일손돕기 등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귀후나 사회견학의 원래 취지인 수용생활에서 오는 고립감과 사회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의미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Q 방송청취나 신문을 구독하면 사회변화를 꾸준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A 방송청취는 가능하지만 피보호감호자들은 채널 선택권은 없습니다. 방송은 대부분 녹화된 것이고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보기 어렵습니다. 자비로 구입하는 신문 역시 교도소나 청송보호감호소 관련 기사는 가위질되기 일쑤입니다. 사회의 큰 변화는 교도관들에게 귀동냥해 감지할 뿐입니다. 도서관 역시 피보호감호자들로부터 볼 만한 책이 없다

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 활용도도 매우 낮습니다.

8) 기타

Q 피보호감호자들은 감호소 내 규율과 관련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A 피보호감호자들은 형벌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수용생활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생활의 자유로움이 인정돼야 하지만 생활 전반의 통제수준은 수형자와 다름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청송보호감호소는 징벌이나 수갑 등 계구 사용과 규칙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행형법에 따라 수형자들의 내부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97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송보호감호소 실태조사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376명 중 80% 이상이 생활수칙과 규율이 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규율의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60%나 됐습니다. 또 조사대상의 30%정도가 실제 규칙위반으로 징벌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70% 정도는 청송보호감호소의 많은 규칙이 피보호감호자를 억압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며 교도관들

에 대해서도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이 60%이상 나온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소장의 권한, 가출소

Q 피보호감호자의 수감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보호감호는 형기처럼 법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기간을 7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 수용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보호감호자는 7년을 다 채우고 만기출소를 하거나 그 전에 가출소를 하든지 병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보호감호자들은 가출소로 청송의 문을 나섭니다.

96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수용기간은 대부분 3년 이상 4년,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습니다.

Q 가출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A 피보호감호자는 매년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사회보호위원회가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지만 사실 감호소장이 올린 예비명단을 확정하는데 불과합니다. 검사가 가출소 후보자를 사회보호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또 감호소장 역시 검사를 통해 가출소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임소 2년이 지나고 분류처우등급 최하 등급인 '마'급을 제외한 '가나다라'급의 피보호감호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명에 따라 절도는 3~4년, 강도는 5년, 기타 범죄는 6년 이상이라는 공식에 맞추어 가출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보호감호자 개개인에 대한 각각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Q 지난해 청송 제2감호소 청송보호감호자들의 집단단식 농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가출소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외국의 경우 가출소와 가석방은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직접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출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당시의 여론에 따라 가출소율이 좌우돼 왔습니다.

가출소가 유일한 회망이 돼버린 피보호감호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송보호감호소

의 비인격적 처우를 감내하거나 심지어 비굴한 아첨을 일삼기도 합니다. 피보호감호자들이 출소 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직업훈련에 매달리고, 교육과정도 없는 학사반에 들어 가려는 이유도 바로 가출소 때문입니다. 또한 2감호소보다 수용기간이 많이 남은 청송 1교도소와 1감호소 수용자들의 갈등표출이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열심히 생활해봤자 죄명에 따른 내부 기준에 맞춰 가출소를 심사하기 때문에 피보호감호자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출소자 명단에 오르려면 출소 후 주거지와 보호자, 취업예정지, 보증인 등의 확인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은 가족과 유대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피보호감호자들에게 또 하나의 넘기 힘든 장벽입니다.

상습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청송보호감호소까지 지어 장기간 수용해놓고 취업알선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역할을 피보호감호자와 그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 가출소 절차

법무부 내 사회보호위원회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의사 자격이 있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피감호 집행 개시 후 매 1년 가출소 여부를 결정

검사

주거지 관할 검사(의성지청)는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설장, 즉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장은 가출소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사에게 가출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소장

매 6월마다 피보호감호자의 동태, 처우등급, 피보호감호자의 개선여부 등을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 소장은 가출소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사에게 가출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감호기간이 2년이 지난 자 중 처우등급, 가나다라급에서 추천 가능.

청송보호감호소내 가출소 심사요청위원회

청송보호감호소 내 가출소 심사요청위원회는 판사, 검사, 보호관찰소장 또는 사회명망가 중 3인에서 5인을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소장. 소장이 추천한 가출소 심사 신청 명부 결정.

3장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호법과 헌법

Q 헌법과 사회보호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A 헌법이 국민의 의사 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지만 사회보호법은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입니다.

사회보호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됐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란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제정된 일종의 혁명위원회입니다.

당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 5. 17. 전국에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해 국가보위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을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역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합니다.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의 집행과는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또한 교도소와 다르지 않아 실제로 피보호감호자들은 교도소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피보호감호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일정 범죄에 대한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 당시 판사는 '재범의 위험성 소멸 여부'를 집행기간 중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따로 보호감호 기간을 정하지 않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피보호감호자의 출소 및 집행면제 여부를 판사, 즉 법원이 아닌 법무부(사회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2조 6항)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감호의 종료 및 면제 등 역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 사회보호법과 인권

“아직 이 세상엔 전과자, 피보호감호자라면 나와는 너무나 멀기만 한 이질적인 집단, 사회로부터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높은 담장, 철창 우리 내에 가두고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과 개념이 한 인간을 낙인찍고 결국엔 제도적 부당성을 합리화하여 영원히 기회균등 없이 탈락자가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쓰레기임 뿐입니다”

-청송보호감호소로부터 온 편지 중에서-



사회보호법은 왜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인가요?



사회보호법은 출발 자체가 반인권적 발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사회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은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불법적인 권력 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육생들의 사회 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따라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분은 재사회화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격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호감호자들은 철저하게 유린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 속에 독재정권은 물러났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반인권적 유물은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으로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보호감호제도의 신체구속은 본질적으로 반인권인 것입니다.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난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

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사회로부터 다시금 격리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회보호법은 사회구조적 모순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74%는 단순절도범입니다. 또한 피보호감호자들은 성장기에 배움의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16%는 전혀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50.4%가 겨우 초등학교 교육을 이수했을 뿐입니다. 세상은 온통 고학력자로 넘쳐난다고 하지만 전체 1600여명의 피보호감호자들 중 대학교 문턱을 넘어 본 사람의 수는 채 열 손가락을 넘지 못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이 경제사회적 약자 출신이며, 빈곤계층에 속해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대다수 피보호감호자들은 극단적인 부익부빈익빈 사회 속에서 양산된 생계형(빈곤)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범죄의 상습화를 초래하는 빈곤의 문

제, 즉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 등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범죄의 책임을 오로지 개인의 나태함과 심성의 문제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격리, 수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범죄를 양산시키고 있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호감호제도는 이러한 문제해결방향에 완전히 역행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수용생활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사회정착 및 적응 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으며 가족 해체 등 이중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감호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수용시설에 가두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반인도적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사회보호법은 ‘가진 자’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보호법은 처음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빈곤계층 국민들을 염두에 둔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회보호법이 ‘사회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기만입니다. 이 법은 이중삼중의 처벌로 위협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요소를 잠재우고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치안법’입니다. 즉,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통제 및 억압의 장치라면, 사회보호법은 사회의 하층민과 잠재적인 불안요소에 대한 ‘합법적’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호법 폐지, 그 후의 대안과 외국 사례

Q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에 전과자가 많아서 사회가 불안해 지지 않을까요?

A 우리 법체계는 이미 누범가중이나 상습성 가중규정을 두고 있어 누범이거나 상습성이 있는 범죄인 등에 대해서는 범원이 범죄인의 교육, 개선에 부족함이 없는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을 적절히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감호 대상자의 대다수가 빈곤계층이고, 그 범죄 행위 역시 생계형 혹은 빈곤범죄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체구속과 이른바 교화의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Q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A 보호감호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시설 내에 격리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위 제도를 시행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자이거나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로서, 소액의 절도, 사기 등의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 혐성이 큰 폭력범이나 성범죄인 등은 통상 장기간의 자유형에 의해 격리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위 제도가 당초 목적한 바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1967년 위 제도를 폐지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고 탄력적인 가석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프랑스에서도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0년간 형사시설에서 또는 가석방 제도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후견인제도를 채용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하에 1981년 폐지되었습니다.

◎ 스웨덴 역시 1965년 신형법에서 중대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81년 이를 폐지하고 누범 가중을 부과하였습니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호감호와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하나 1년에 몇십명 선고를 받을 정도이고, 형의 집행도 엄격히 구별되어 있으며, 가출소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치료감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정신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부재로, 치료감호가 일정 부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단순한 격리가 아닌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이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관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적 요소(처우에 있어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 시행에 대한 외부 감시의 부재, 치료 환경의 문제)도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치료감호제의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치료감호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4장 보호감호와 싸우는 사람들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로 인정받은 박영두 사건

1980. 8. 경남 통영의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박영두씨는 무장 계엄군 20여명에 의해 충무경찰서에 연행된 후 창원 39사단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삼청교육을 받고, 강원도에 있는 제1감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 1. 16. 정식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해 일명 '쪽지감호'라 불리는 '보호감호 2년'을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1감호소에서는, 조교들이 감호생을 농구 골대에다 끈으로 묶어 놓고 각목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하거나, 지프차로 감호생을 매달고 달리거나, 폭행당하여 먹을 것을 토한 경우 '인생쓰레기들이 더럽힐 장소가 아니다'라며 토한 것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참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보호감호자들은 '집에 보내주든지 정식재판이라

도 받게 해 달라’, ‘구타를 하지 말라’, ‘교육을 빙자해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요구하며 폭행에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항의과정에서 분노가 폭발하여 폭력사태로 확대되었고, 결국 진압과정에서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군인 1명도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보호감호자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박영두씨는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청송 제1보호감호소(현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박영두씨는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도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형을 받고 이송된 재소자들과 함께 ‘보호감호철폐’,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측은 감호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박영두씨를 ‘엄중독거 사동’으로 불리는 특별사동으로 전방시켰고, 지하실로 끌고 가서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 뒤 ‘비녀꽂기’⁴⁾ 상태에서 뒤로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당

4)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고개 뒤로 젖히고, 양 팔꿈치가 서로 불도록 묶은 다음 목과 발꿈치 사이에 각목을 끼워 각목을 틀어 젖히며 고통을 주는 방식의 가혹행위

겨 묶거나 ‘통닭구이’⁵⁾한 상태에서 교정봉, 꼬은 포승, 피대, 고무호스, 워커발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지하실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감호제도가 시행될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호감호가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보다는 피보호감호자를 억압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재소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재소자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교도당국의 불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의 개선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교도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교도당국에 문제가 발생하게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주화 운동에 해당한다”

5) 양 손목을 뒤로 묶고, 양 발목을 묶은 다음 묶은 부분을 포승줄로 연결, 포승줄을 잡아 당겨 몸이 활처럼 휘게 해서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

2.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1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있던 유00씨는 1992. 4. 20.부터 1992. 4. 25.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고지의 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집필(문서를 작성하는 것) 신청을 하였으나 청송보호감호소측이 허가하지 않았고, 위 허가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에의 청원 및 고소를 하고자 집필신청을 하였는데 역시 불허처분을 당했으며, 다시 위 불허처분에 대해 다시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고자 집필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불허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씨는 1992. 8. 6. 어머니와 면회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면회실에서 입회하고 있던 교도관이 즉시 원고의 입을 막고 손목을 비틀어 면회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유씨는 결국 청송보호감호소측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위

소송에서 청송보호감호소측은, 집필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집필허가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씨에게 집필내용의 요지를 문의했으나 유씨가 답변하지 않고 무조건 집필허가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필집하려는 내용이 집필할 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며, 접견 불허에 대해서는 '내용이 소내 생활에 대한 항의를 기타 규율유지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시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데, 유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형법이 피보호감호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호감호자가 집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담당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필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행형법에서 접견 내용을 이유로 접견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접견 중단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송보호감호소가 재소자를 철저하게 외부와 격리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원

천적으로 봉쇄하며, 그 속에서 누구로부터 감독이나 견제도 없이 피보호감호자들의 인권을 짓밟아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2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던 윤00씨는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측이 윤씨에게 재정신청을 취하하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가출소의 조건으로까지 제시하였으나, 윤씨는 끝까지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씨는 출소를 앞두고 며칠 전 한 교도관으로부터 재정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출소 후 법원에서 자신의 이름과 무인이 찍힌 재정신청 취하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윤씨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되었다며 1998. 3.경 당시 교도관과 소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문서감정계의 원로 이송운이 재정신청취하서에 있는 무인은 다른 지

면에 찍힌 무인을 껌종이를 사용하여 찍어낸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윤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씨의 주장대로라면, 청송보호감호소측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넘어, 그들의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와 같은 범죄행위도 일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2002년 집단 단식 농성에 대하여

그동안 피보호감호자들은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각종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그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이 갖는 역사적 환상에 매몰되어 합헌 결정을 해왔습니다. 사법부의 합헌 결정 아래, 청송보호감호소는 기존의 처우들을 되풀이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을 잠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추상적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반

시민들의 침묵 아래 피보호감호자들의 존엄성과 인권은 무참히 짓밟혀 왔습니다.

사법부로부터, 일반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한 피보호감호자들은 결국 2002년 그들 스스로가 집단 단식이라는 최후의 저항 수단을 선택하며 집단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호감호제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며 부수적으로 사회정착금으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근로보상금과 사회보호위원회의 형식적인 가출소 결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어, 2003. 3. 11.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가 결성되었고, 같은 날 피보호감호자 6명이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약 600여명의 청송 제2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피보호감호자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사건은, 기존에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합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적용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과 작업상여금의 기준, 그리고 서신검열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03년 3월 11일 22개의 시민·인권 단체들이 모여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인권침해 요소들을 알려내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 위해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현재는 총 26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경과】

- ④ 2002. 4~10. 세차례에 걸쳐 청송보호감호소내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 ④ 2003. 2. 26. 참여연대 강당에서 9개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3. 11. 22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4. 10.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공식방문.
2차 헌법소원을 위해 위임의사를 밝힌 피보호감호자 600여명의 위임장 접수.
- 4. 29. 열린회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Workshop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최.
- 5. 13. 법무부 장관 면담
- 5. 22.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개토론회.

공대위는 이후 지역 순회 토론회, 2차 집단 헌법소원, 피보호감호자 피해 백서,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공대위 참여단체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앰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2003. 4. 30 현재)

【 공대위 구성 】

- ♠ 고문 고은 시인, 고영구 변호사, 유현석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
 - ♠ 공동대표 최영도 변호사(참여연대) 김용수(한양대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 ♠ 자문위원회 김동한 소장(법과 인권연구소), 김형태 변호사
 - ♠ 집행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 ♠ 사무국 인권운동사랑방(유해정), 천주교인권위원회(김덕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본활동방향

첫째, 보호감호제도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일정 시설 내에 구금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제도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

-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이 빈곤계층이고 그 범죄도 절대다수가 절도 등 생계형 범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범죄의 원인과 책임은 상당 부분 우리사회가 져야 하며 범죄퇴치를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범죄의 원인과 그 책임을 오로지 범죄인 개인에게 지워 형벌 이외의 추가적 구금을 강요하는 것은 용인 될 수 없고 사회방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현행 사회보호법 및 보호감호의 집행은 반인권적이므로 사회보호법은 즉시 폐지되고, 청송보호감호소의 문은 즉시 열려야 한다.

- 사회보호법은 출발 자체가 반인권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입법목적인 사회 복귀보다는 격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보호감호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 이념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보호감호처분을 선고 받은 피보호감호자들이 수감된 청송 제1, 2보호감호소는 그 시설면에 있어서 교도소와 동일하다. 그리고 그 처우에 있어서도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의 집행과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보호감호제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보호감호기간은 전적으로 법무부 소속 사회보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의 적부를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한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한다.

- 보호감호의 집행 현실은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보호감호제도가 형의 집행이 아닌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호감호자들을 행장등급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고 있고, 접견, 서신, 도서 열람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을 받는 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율을 그대로 준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또한 공간이 매우 비좁아 피보호감호자들은 침식과 기거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보호감호 집행의 실태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 보호감호제도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생활 여건을 파괴하는 제도이다.

형편없는 수준의 근로보상금은 사회 정착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열악한 교육프로그램은 취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구금으로 대부분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감호제도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여건을 모두 파괴한다. 따라서 현행 보호감호제도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가 아니라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 보호감호제도는 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실제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이 보여주듯 이미 보호감호제도는 그 취지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이 제도는 범죄인 개인을 철저히 파괴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고립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는 즉시 폐지되고,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 피보호감호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청송 제1, 2 보호감호소의 문은 즉시 열려야 한다.

- 사회보호법은 그 근간이 보호감호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이는 폐지됨이 마땅하고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감호는 보안위주가 아닌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